

변경대비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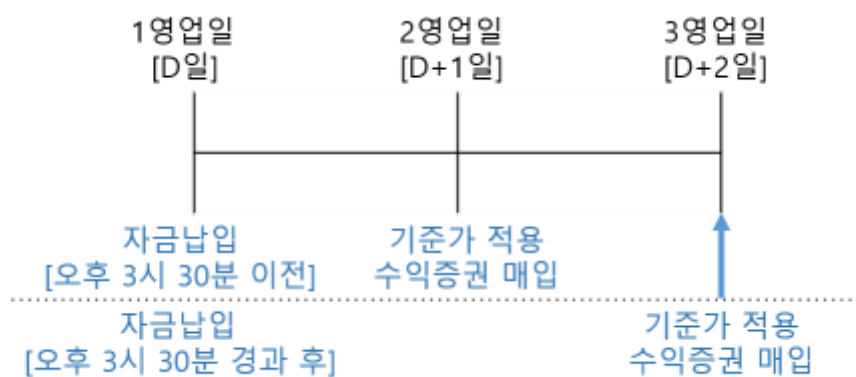
[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퇴직연금 중소형주 증권 자(子)투자신탁 1 호[채권혼합]
2. 효력발생일 : 2026 년 7 월 23 일
3. 정정사유 :
 - 수익증권 매입 환매시 기준가 적용시간 변경(15:30 → 17:00)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<요약정보> 매입 방법	•15시30분 이전: 2영업일 기준가 매입 •15시30분 경과 후: 3영업일 기준가 매입	•17시 이전: 2영업일 기준가 매입 •17시 경과 후: 3영업일 기준가 매입
환매방법	•15시30분 이전: 3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•15시30분 경과 후: 4영업일 기준가 5영업일 지급	•17시 이전: 3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•17시 경과 후: 4영업일 기준가 5영업일 지급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신설>	효력발생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	가. 매입 (2)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,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. 가. <u>오후 3시 30분</u>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납입일(D 일)의 다음 영업일(D+1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. <u>오후 3시 30분</u>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납입일(D 일)로부터 3영업일(D+2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[주1] (3) 매입청구의 취소(정정) 투자신탁 매입청구의 취소(정정)는 매입청구한 당일에 한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. 다만, <u>오후 3시 30분</u> 이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<u>오후 3시 30분</u> 이전에 매입청구의 취소(정정)가 가능합니다.	가. 매입 (2)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,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. 가. <u>오후 5시</u>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납입일(D 일)의 다음 영업일(D+1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. <u>오후 5시</u>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납입일(D 일)로부터 3영업일(D+2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[주2] (3) 매입청구의 취소(정정) 투자신탁 매입청구의 취소(정정)는 매입청구한 당일에 한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. 다만, <u>오후 5시</u> 이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<u>오후 5시</u> 이전에 매입청구의 취소(정정)가 가능합니다.

	나. 환매 (2)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. <u>오후 3시 30분</u> 이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나. <u>오후 3시 30분</u>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5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[주3] (3) (생략) (4) 환매청구의 취소(정정) 투자신탁 환매청구의 취소(정정)는 환매청구를 한 당일에 한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. 다만, <u>오후 3시 30분</u> 이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<u>오후 3시 30분</u> 이전에 환매청구의 취소(정정)가 가능합니다. (5) (생략) 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가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(<u>15시 30분</u>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전영업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나.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	나. 환매 (2)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. <u>오후 5시</u> 이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나. <u>오후 5시</u>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5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[주4] (3) (현행과 동일) (4) 환매청구의 취소(정정) 투자신탁 환매청구의 취소(정정)는 환매청구를 한 당일에 한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. 다만, <u>오후 5시</u> 이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<u>오후 5시</u> 이전에 환매청구의 취소(정정)가 가능합니다. (5) (현행과 동일) 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가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(<u>17시</u>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전영업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나.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
--	--	--

[주1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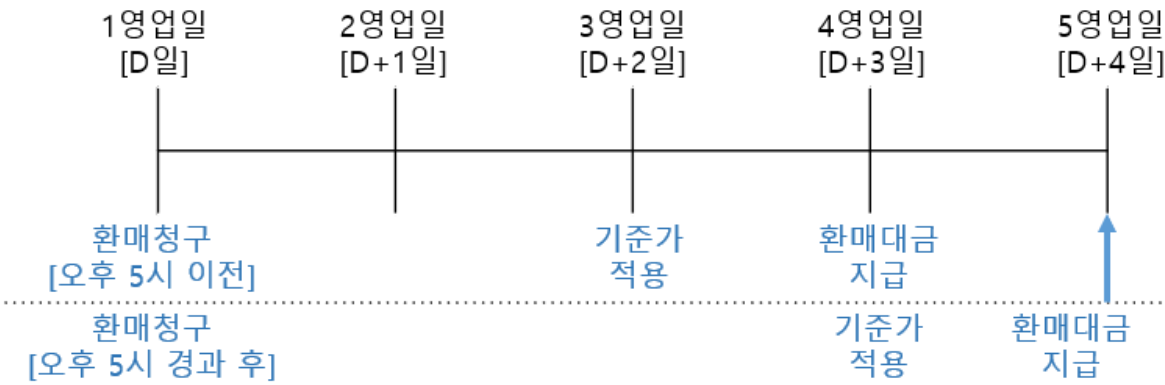
[주 2]



[주 3]



[주 4]



변경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- 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퇴직연금 중소형주 증권 자(子)투자신탁 1 호[채권혼합]
- 2. 효력발생일 : 2026 년 7 월 23 일
- 3. 정정사유 :
 - 수익증권 매입 환매시 기준가 적용시간 변경(15:30 → 17:00)
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<요약정보> 매입 방법	•15시30분 이전: 2영업일 기준가 매입 •15시30분 경과 후: 3영업일 기준가 매입	•17시 이전: 2영업일 기준가 매입 •17시 경과 후: 3영업일 기준가 매입
환매방법	•15시30분 이전: 3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•15시30분 경과 후: 4영업일 기준가 5영업일 지급	•17시 이전: 3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•17시 경과 후: 4영업일 기준가 5영업일 지급